

제2차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결 과 보 고

1. 개 요

- 일시·장소: 2020. 7. 17.(금). 14:00~18:00, 경사노위 중회의실3
- 참석자: 정현찬 농특위원장, 김영란 위원장 등 포럼위원(20), 전문가(2), 단체 및 기관 관계자(11), 기자(4), 농특위 사무국(5) 등 43명
- 주요 내용: 주제발표 및 논의, 포럼운영 관련 보고 등
 - (주제)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리 향상
 - (1주제)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개선방안
 - ▶ 발제: 정은미 위원, ▶ 지정토론: 최윤지 위원
 - (2주제) 농민등록제, 성평등 가치실현 방안
 - ▶ 발제: 이수미 위원, ▶ 지정토론: 김정섭 KREI연구위원
 - (3주제) 여성어업인의 현실과 지위 향상
 - ▶ 발제: 이창수 위원, ▶ 지정토론: 장경희 한여련 군산시분회장
 - (보고) 연구용역추진계획, 작은 국제 포럼(안) 등

2. 주요 내용 및 결과

① (1주제)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개선방안

《요약》

- (법적지위)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공동경영주로 등록(18)
 - 여성농업인 육성법에는 '여성농업인 법적 지위' 내용 없음
- (문제) 가족농 농업경영체는 사업체란 인식이 일반화되지 못함
 - * 생활(농가)과 사업체(경영체) 미분리
 - (농업경영체 등록의 한계) 농업인과 구분되는 농업경영체 불분명,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제 아님, 경영체 인증요건에 조세관련 사업자 등록이 미포함

□ (해외사례) 독일, 프랑스, 일본

- (독일 농업경영체) 사업체로서 농업경영체, 최소 영농규모 규정, 사회보험가입 의무, 조세법의 농업경영체 등록
- (프랑스 여성농업인 사회보장제도) 여성농업인은 '경영주, 임금노동자, 배우자-협력자' 중 지위 선택 의무화('05년), 세 지위별 사회보장제도 소개
- (일본 여성농업인 경영참여 확대) 여성이 인정농업자가 되어 경영에서 여성지위가 명확해짐, 가족경영 협약체결(전체 농가 중 24.7%)시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사업 지원, 인정농업자 신청 가능, 농업인연금 지원

□ 해외사례의 시사점으로 본 개선방안

- 농업경영체 정비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 필요
- 농업경영체(개인이 아니라 사업체)는 조세 납부 및 사회보험 가입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
- 여성농업인의 우대정책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이 있음
 - (프)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활동에 따른 지원에 남녀차별 없음
 - (일) 전문인력 육성(교육, 연수), 공적자금, 보조사업 지원에 우대

- (법적지위)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이하 기본법) 정의로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할 수 없음. 프랑스 경우 1980년 농업기본법 제정으로 여성을 농업경영주 협력자로 인정하면서 여성지위가 향상됨(최윤지 위원)
 - (조세의무) 농업경영체를 사업체로 규정하면 조세의무를 통해 지위 확보 및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짐. 현실상 우리는 조세납부에 대한 농업인 등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며,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봄
 - * 가족농의 경우도 조세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경영체로 규정해야 함
 - (특정 근로 고려)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, 국토 지킴이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납세시 사업자보다는 특정근로자로 간주·등록된다면 그에 맞는 사회적 보장 제도를 마련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봄
 - (사전 합의 필요) 농업인의 경영규모별 소득산정, 농업인 정년 등 규정
 - 프랑스 사례의 세 지위별 하나를 선택해 여성농업인을 규정하고 사회적 지원을 갖추나갔으면 함

- **(여성농업인 지위)** 기본법 개정 등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되어야 함(오순이 위원)
 - 농민수당을 본격 논의하면서 공동경영주가 도입이 됐지만 실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임을 확인. 또한 행복바우처 등 사회적 혜택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여성의 법적지위를 고려해줬으면 함
 - 우리는 왜, 외국처럼 조세제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는지 궁금함
 - **(농업세제)** 농업경영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함. 세금은 크게 소득세,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세제로 사업체를 정하지는 않음(박순연 국장)
 - 등록 사업자는 2-3만호 정도임. 부가가치세는 농산물의 경우 면세이며, 실제 외국과 달리 세제제도에 의해 사업체를 정하지는 않고. 그 대신 농업경영체법을 운영하고 있음
 - **현행법이 갖고 있는 한계, 개선방법 모색 필요**
 - (기본법) 여성 지위만 별개로 논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, 농업인 및 경영체 규정 등 검토(오미란 팀장)
 - (경영체법) 농업정책지원 근거를 담은 법으로 조세나 사회보장 등은 고려가 안 되어 있음(오미란 팀장)
 - (여성농업인 육성법) '05년부터 여성 법적 지위가 제기됐으나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, 권리와 지위를 제기하는 정도만 담김(오미란 팀장), 여성농업인 육성법 정리 필요(오순이 위원)
 - 여성농업인 규정을 별도로 하기 어려우니 프랑스 사례에서 본 세 지위를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하여 법에 담았으면 함(최윤지 위원)
 - 사회보장*은 EU의 경우 농민은 의무화임. 여성농업인 지위와 별개 논의가 필요하며, 공동경영주에 대한 향후 포괄적 검토도 필요함(오미란 팀장)
- * (우리나라) 건강보험은 의무화, 연금보험과 재해보험은 선택사항인데 농민에게 지원,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인데 가입하지 않고 있음.

② (2주제) 농민등록제, 성평등 가치실현 방안

《요약》

※ 농민등록제는 공론화는 오늘이 처음이며, 앞으로 충분한 논의 필요

□ (배경) 농민등록제 제기와 여성농민

- 농민수당 확산과 함께 농민이 누구인가라는 문제 제기
 - 현행 법률에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규정(농업인 ≠ 농민)
 - * 농사를 짓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치 못하는 농민, 경영주 중심의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는 여성농민, 겸업 여성농민, 300평 이하 소규모 청년농·고령농, 외국인 노동자 등
- 여성농민들은 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함. 실제 농사짓는 농민을 명확히 하여 농업주체로 인정받아야 함

□ (정의) 법률상 농업인의 정의만 규정, 농민등록제 논의에 앞서 농민의 정의 정립 필요

- * 농업농촌기본법, 농지법,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농업인 기준을 규정
- 유엔농민권리선언: 농민은 소규모 영농 외에도 가축사육, 유목, 어업, 임업, 수렵, 채집, 농업 관련 수공업업 등의 종사자, 이목민·유목민, 무토지 농민, 농장 노동자, 이주·계절노동자 포함

□ 성평등 가치실현을 위한 농민등록제 방향과 과제

- 농민등록제는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,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와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함
 - (농민등록제 도입 공론화) 현장의 요구 파악, 도입 목표 및 목적 설정, 농업경영체 등록제와의 관계 설정 3가지안*, 현행 법률정비 등을 제안
- * (1안)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면 개편, (2안) 농업경영체 등록제 존치, 농민등록제 도입, (3안) 농업경영체 폐지, 농민등록제 도입
- 농민등록제는 농지원부, 농업인 확인서, 농업경영체 등의 정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고, 여성농민의 통계시스템 구축이 가능
- 성평등 관점을 견인하는 제도로 성평등한 농촌사회 구현의 역할 가능

- (법제·정책상 농민이란 용어 호출) 현행법상 '농업인' 규정에서 농사 짓는 '여성'과 '농촌 주민' 배제됨(김정섭 연구위원)

-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제도로써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전면개편(1안)이나 등록제 존치 및 농민등록제 설립(2안)은 미흡함. 법률에 '농민'이란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 현재 배제된 사람이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함

○ (해결방안) 현행 '농업경영체 등록제도'를 개선

-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가 아니라 농업인단위임. '농가' 범주를 도입하여 관계자를 등록*하고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조치 필요(김정섭 연구위원) → 이 경우 고용노동자가 빠짐(오미란 팀장) → 가족구성원이 아닌 농업노동자(농업인 개인)로 분류를 제안(김정섭 연구위원)
 - * 농가에 경영주, 공동경영주, 유급가족농업종사자, 무급가족농업종사자 등을 개인별로 등록
- '농민 정의'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봄. 농업경영체 등록 개편은 농지 문제와 연결해 부당한 문제(임차농 등)를 논의, 해결해야 함(이수미위원)
- 여성농업인(공동경영주) 법적 지위의 공식성 문제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는 별개임. 경영체 등록 절차에 대한 홍보도 필요(오미란 팀장)
- 실제 부부가 각자 경영체로 등록하면 정책의 수혜범위가 넓어짐. 홍보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경영체 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함(김정섭 연구위원)
- 청년농의 경우 대부분 농업경영체이며, 부모님과 같이 가족농을 하는 청년의 경우 무급 노동자로 신용카드도 만들지 못함. 여성농업인 문제는 남성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부부대상으로 교육 필요 (이소희 위원)
- 공동경영주의 위상을 명확히 정립하여 실효성을 확보(김성아 위원)

③ (3주제) 여성어업인의 현실과 지위 향상

《요약》

□ (현실) 여성어업인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위 낮음

- (사회적 지위) 조업시 보조자, 자존감 낮음, 수협과 어촌계 등 여성비율 낮고, 전국 조직화(1개), 해수부 정책 관심도 타 분야에 비해 취약

* 여성농어업인육성법, 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에 여성어업인 정의 규정

□ 여성 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개선방안

- (어업인 용어) '여성수산인'으로 용어 변경하여 생산중심의 어업을 탈피
- (비즈니스 육성)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유도
- (교육) 어업인 대상의 지속적 교육으로 어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
- (제도 개선) 수협법 개정하여 여성임원, 여성조합원 비율 확대
- (전문조직) 여성어업인 전문 지원조직 지정

- (용어변경) 협소한 어업의 정의에서 탈피, ‘여성 어업인’을 ‘여성 수산인(유통·가공·판매활동 종사)’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계기 필요(장경희 군산시분회장, 안창희 사무총장)
- (전담조직과 정책 지원) 해수부 등 행정예 여성어업인 전담지원조직 설치 필요(장경희 군산시분회장)
 - 지역에 여성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(예. 농업기술센터), 수산물 가공품 등 창업지원 지원정책과 여성어업인 전문교육기관 등 필요(장경희 군산시분회장)
 - 농식품부와 달리 조직이 작아서 별도 부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겠음(이정미 사무관)
 - KMI에서 자체연구 수행 후 5차 여성어업인 기본계획수립을 할 계획임, 실효성 있는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(이정미 사무관)
- (인식전환 필요) 여성의 어업진입 장벽은 노동 강도보다도 여성을 생산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바뀌어야 함(김옥임 위원)
 - 여성의 법적 지위가 경제적 지위향상과 연계된다면 과거 농진청의 ‘여성 일감 갖기 사업’을 해수부에서도 마중물 사업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(장정희 팀장)
 - 어촌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등이 다뤄졌으면 함(김영란 위원장)
 - 교육에 남성 어업인들도 참여시켜 인식전환에 노력하겠음(이정미 사무관)

4 (보고) 연구용역 추진계획, 작은 국제 포럼(안)

- (연구) 추진계획 설명,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추후 연구기관 선정 후 운영위 착수보고를 거쳐 포럼에서 연구진행사항을 공유하겠음
- (작은 국제포럼)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운영위에서 추가로 논의한 후 포럼에서 결과를 공유하겠음

3. 향후 주요 계획

☐ 농특위 정책연구용역 재입찰 공고 및 기관 선정(7~8월)

* 과제명: 농어촌의 미래 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 방안

☐ 포럼 3차 운영위원회 개최(8월중)

* 2차 포럼 평가 및 3차 포럼 준비, 국제포럼 등 논의

☐ 제3차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개최(9월중)

* 주제: 직업역량 강화

☐ 제4차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, 작은 국제포럼 개최(10월중)

* 주제: 삶의 질 향상

☐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워크숍 개최(11월중)